



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

01 목 적

- 기술개발자(개인 또는 법인)의 물류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, 국내 물류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

02 관련 법규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7조 및 제58조
- 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46조의 2~6
- 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14조의2~6
- 「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「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10호)」
- 「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(안)」(이하 “지침”이라 한다)

03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대상

-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·개량한 물류신기술·첨단물류시설등 중에서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물류신기술·첨단물류시설등

○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대상 분야

분야	설명
운송	물자의 운송을 위한 장비·보조수단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
보관	물자의 보관을 위한 시설·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
하역	물자를 시설 내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을 위한 시설·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
포장	물자의 효율적 운송·보관·하역을 고려한 포장을 위한 용기·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
정보화	물류시스템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기술
표준화	물류시스템 및 운용 등을 위한 표준화 기술
보안 / 안전	물류시스템 운용 지원을 위한 보안, 안전 제반기술
기타	기타 물류 기술



지정심사 처리절차



KAI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
국토교통부

신청인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
국토교통부

시행 공고

물류신기술지정신청

제출
→

신청서 접수

보안

보안요청
↔
제출

요건검토

공고
요청
→

공고(30일)

관계기관 의견조치 및
이해관계인 의견접수

기술심사

불인정
통보
←

비상정
→

의결결과접수

의결결과 수취

현장심사

불인정
통보
←

결과
통보
→

지정·고시 또는
불인정 결정

의결결과 수취

물류신기술 등록

증서
발급
←

증서 수령

홍보자료 제출

사후관리



지정심사 기준 및 보호기간

01 지정심사 기준

○ 기술심사 기준

[신규성]

-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게 소화·개량한 기술(개발·개량정도, 차별성 및 혁신성)

[진보성]

-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·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,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(성능·품질향상, 시공기간 단축, 첨단기술성)

[안전성]

- 물류기술 이용자의 건강, 생명, 재산 등을 사고,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,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(기술공학적인 안전성, 시험성적 등 분석 및 이용자 안전성)

[경제성]

-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·시공, 유지관리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(설계·시공비 절감, 유지관리비 절감)

○ 현장심사 기준

[현장적용성]

- 공성, 안전성·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물류산업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(시공성, 안전성, 유지관리성)

[보급·활용성]

- 수익성/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(보급성, 활용성)

02 보호기간

- 최신품 기술 최초 지정시 5년의 보호기간이 주어지며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신청 시 연장 심사를 통해 5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(영 제46조의5, 규정 제12조제5항)

지정혜택

01 신기술 인증표시(마크) 사용

-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·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 사용 가능
-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함 (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7조)



02 구매 권고

-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우선 적용 권고 또는 우수 물류신기술 등을 적용한 제품 구매 권고를 할 수 있음(영 제46조의6제1항제2호)

03 입찰가점 부여

- 공공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활용한 제품이나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 제품 또는 공사 등과 관련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음(영 제46조의6제2항)

04 자금 지원

-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·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, 우수 물류신 기술등개발자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지원자금, 신기술사업자금, 기술 보증,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의 우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음(영 제46조의6제1항제1호)

05 그 밖의 지원 혜택

-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전시회 개최, 해외진출 지원, 상용화 성능확인서 발급 등 홍보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음(영 제46조의6제1항제3호)